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5. 4 (금) 평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2007. 5. 7 (월)

다. 상정일자 : 2005. 5. 7 (월) 제1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

3. 주 요 골 자

가.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추가로서 그 상세내역은, 토지매입 1건 4,125㎡ 46,754천원임

○ 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부지, 마하리 195번지외 4필 4,125㎡

4. 검 토 결 과

가.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 미탄면 마하리 195번지 외 4필 4,125㎡, 46,754천원이고

나 취득재산을 보면

○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높이 2.5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향후 탐방객들의 주차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인근부지인 미탄면
마하리 195번지외 4필 4,125㎡를 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거임

라. 검토의견

-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진입도로 계획고 상향조정으로 인해 기존 주차장 부지내로 도로사면이 발생되어 당초 계획되었던 주차장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축소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민물고기 생태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물고기 생태관 인근 재경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05.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

2. 주요내용

□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 추가로서 그 상세내역은, 토지매입 1건 4,125㎡ 46,754천원임.

○ 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부지, 마하리 195번지 외 4필 4,125㎡

3. 첨부자료 및 참고사항

가.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나.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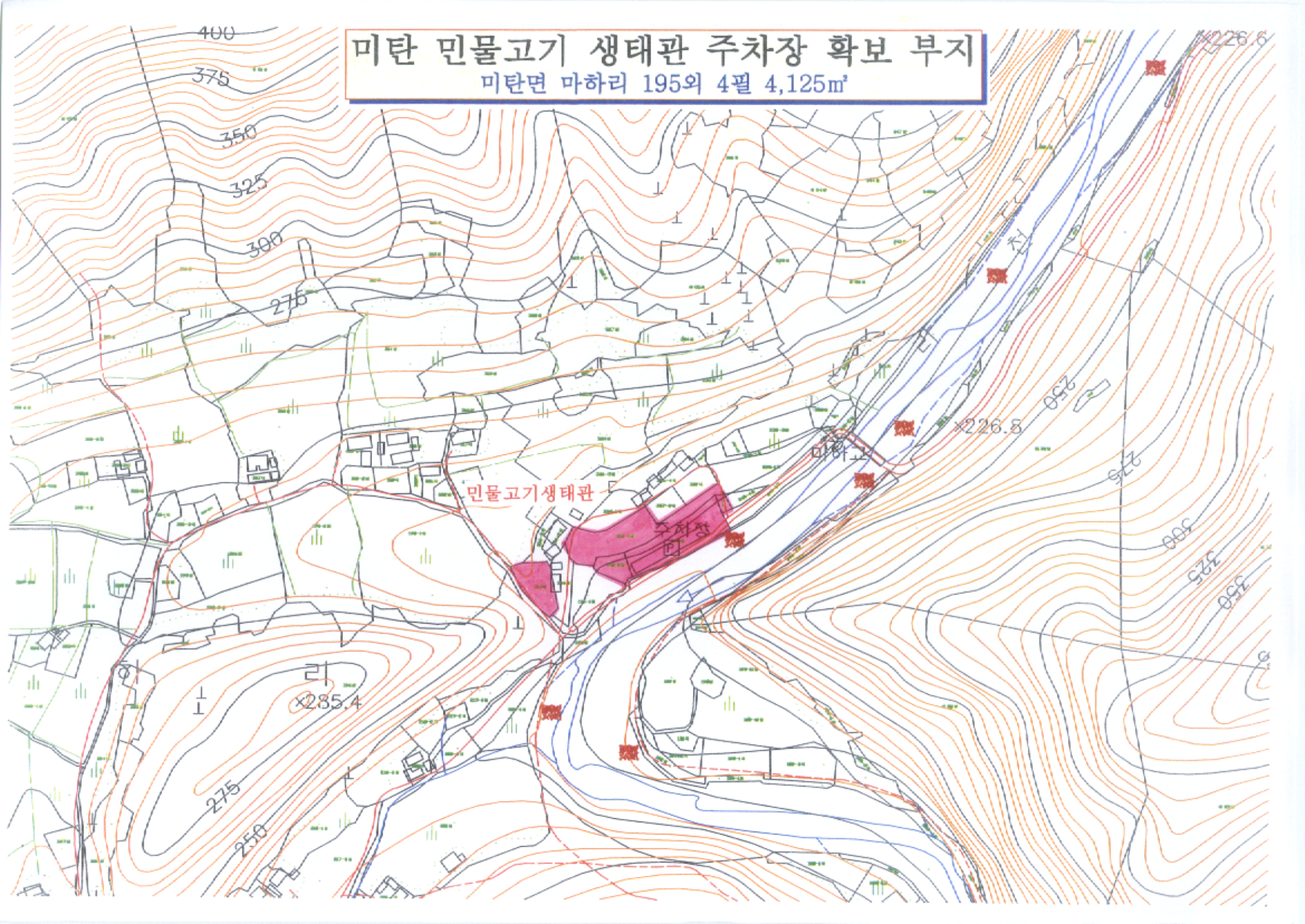
다. 예산조치사항 -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합 계			4,125	46,754			
2	소 계			4,125	46,754		
	묘	마하리 195	724	695	하반기	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부지	국(재경부)
	답	마하리 337-1	1,560	18,408			국(환경부)
	답	마하리 340	1,430	22,308			
	답	마하리 340-2	331	4,303			
	답	마하리 340-3	80	1,040			

미탄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확보 부지
미탄면 마하리 195의 4필 4,125㎡



미탄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확보 부지
미탄면 마하리 195외 4필 4,125㎡



민물고기생태관

토지대장열람조서

<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부지>

재산의 표시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성명	주소	
소계	5필		4,518			
마하리	195	묘지	724	국(재경부)		
마하리	337-1	답	1,560	국(환경부)		
마하리	340	답	1,430			
마하리	340-2	답	724			
마하리	340-3	답	80			

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7. 04. 12.

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인)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조성 계획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마하리 재해위험지구 지정이후 **높이 2.5m 폭 6m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주차장 면적이 감소하여** 향후 동강과 생태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차장 불편이 예상됨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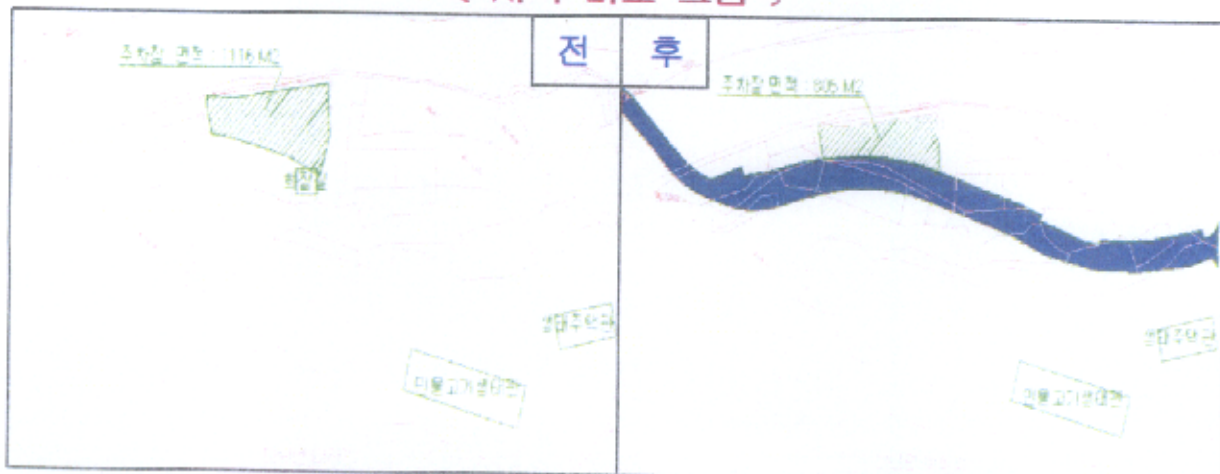
I. 사업개요

- 위 치 : 미탄면 마하리 324외2필지
- 사 업 량 : 대지 10,350㎡, 생태관 1,627㎡(지하1, 지상2)
- 사 업 비 : 8,542백만원(국비:4,271 도비:1,979군비:2,292)
- 사업기간 : 2003~2008

II. 주차장 비교

구분	도로 설치 전	도로 설치 후
주차장 면적	1,116㎡	805㎡

[지적 비교 그림]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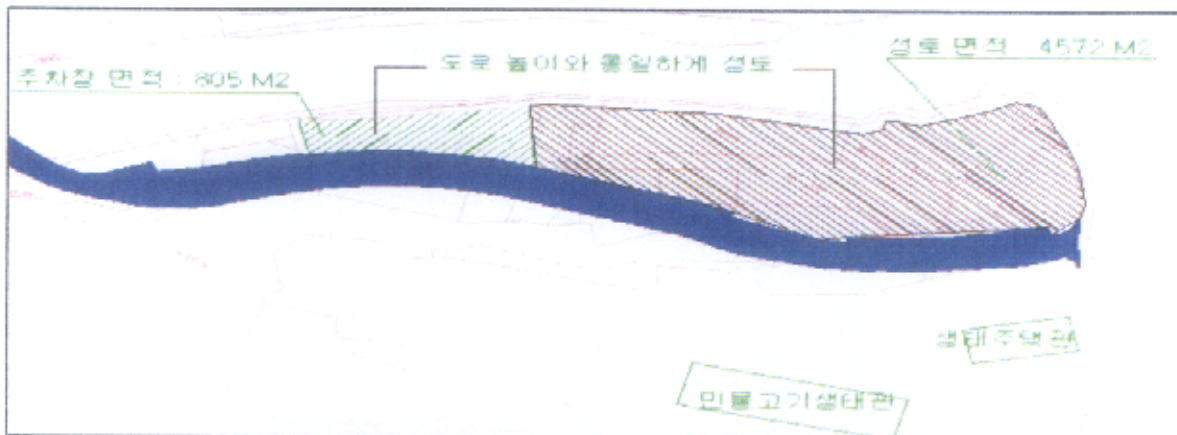


Ⅲ. 주차장 확보 방안

[방안] 기존 주차장 부지와 주변 환경부 토지를 포함하여 2007년 완공될 2.5m높이 도로에 맞춰 성토 후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으로 조성

구 분	조성 전	조성 후
주차장 면적	805㎡	5,377㎡

[성토 후 그림]



[부가 효과]

【터파기 공정에서 발생한 사토(약19,000㎡)를 성토재로 사용함으로써 사토 처리비용(약5억)으로 주차장 조성과 사토처리 2가지 효과기대】

IV.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 계획

가. 매입대상

(단위 : m², 천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유자
지목	소재지	면적		
총계	6필지	4,901	147,030	
답	미탄면 마하리 337-1	1,560	46,800 (30,000원 × 1,560m ²)	국(환경부)
답	미탄면 마하리 340	1,430	42,900 (30,000원 × 1,430m ²)	국(환경부)
답	미탄면 마하리 340-2	331	9,930 (30,000원/m ² × 331m ²)	국(환경부)
답	미탄면 마하리 340-3	80	2,400 (30,000원/m ² × 80m ²)	국(환경부)
묘	미탄면 마하리 195	724	21,720 (30,000원/m ² × 724m ²)	국(재정경제원)
답	미탄면 마하리 340-1	776	23,280 (30,000원/m ² × 776m ²)	김석규외 1인

※ 환경부 토지 - 원주지방환경청 협의완료(2007. 1.22)

나. 공유재산심의 승인신청 : 2007. 1. 31일한(재무과 통보)

다. 예산확보 : **162,030천원**(2007 1회 추경) - 예산부서 협조

○ 토지매입비 : 147,03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 15,000천원

라.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매입 : 2007. 6월 완료

V. 설계변경 계획

가. 각종 인·허가 협의 ----- 2007. 7.

● 농지전용, 하천 점용허가 등

나. 설계변경 및 계약 ----- 200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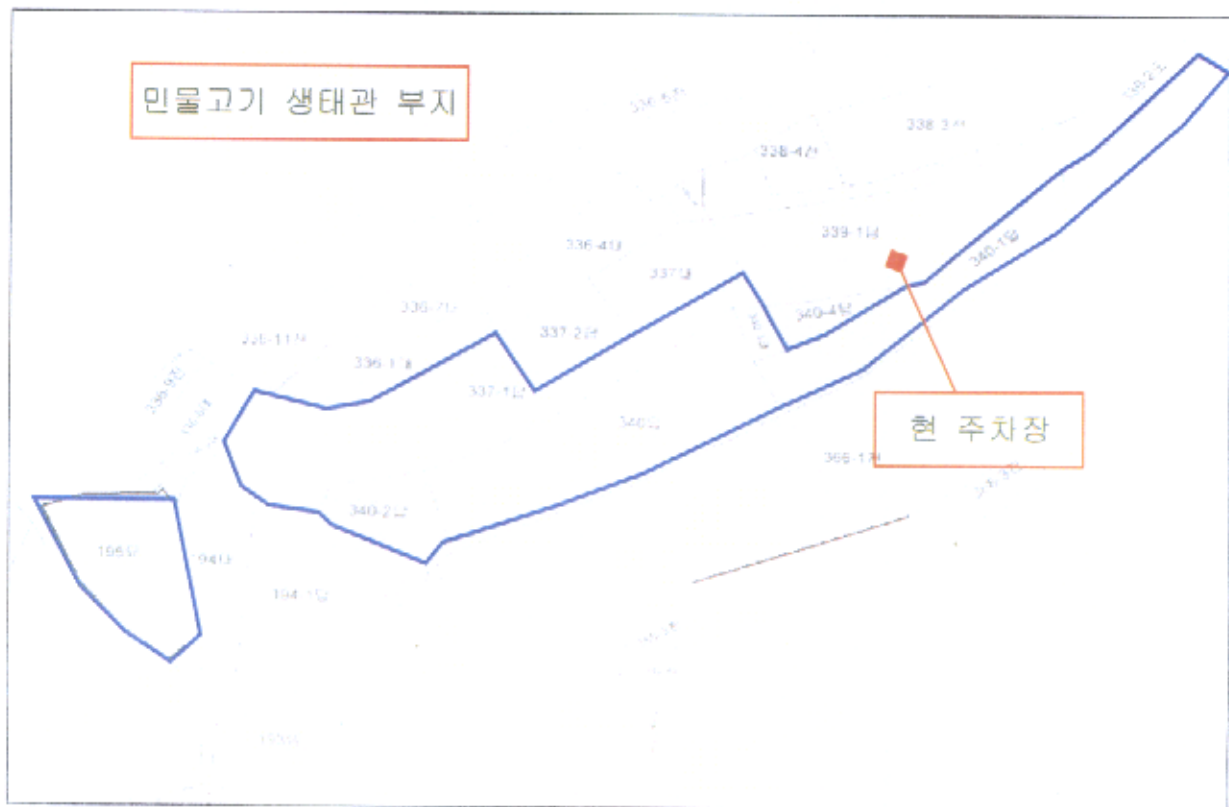
● 변경내용 : 사업비 변경(약 5억 증가 예상), 물량변동, 공사기간

[붙임]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도]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